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14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5242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redacted] 유한회사
피 고	[redacted]시 [redacted]출장소장
변 론 종 결	2015. 7. 21.
판 결 선 고	2015. 9.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635,247,550원의 부과처분 중 3,081,948,930원의 부과처분 및 농어촌특별세 365,524,740원의 부과처분 중 308,195,0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14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3.경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redacted]시 [redacted]동 415 외 155필지 254,057㎡(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를 109,087,971,970원에 매수하여 2006. 9. 14.부터 2008. 7. 17.까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들은 2009. 1. 30.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48호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

다. 피고는 2013. 6. 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일인 2009. 1. 30.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들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3,635,247,55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365,524,74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3. 6. 1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2006. 9. 14.부터 2007. 12. 28.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 3.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14

제105조 제2항의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어도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의미하고, 구 지방세법 제120조는 취득세 과세물건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들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이 사건 토지들의 취득일인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피고와 같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법률의 근거 없이 납세자에게 불리한 해석에 터 잡은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2006. 9. 14.부터 2007. 12. 28.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같은 날 사실상 취득한 토지들에 대한 취득세 합계 3,081,948,930원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308,195,090원의 부과처분 부분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잔금지급일부터 신고·납부기한인 30일이 지난 다음날을 기산점으로 하여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인 5년을 도과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취득세는 과세관청이 취득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부과할 수 없고,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은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30일까지를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각 호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 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14

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각 호에서 취득 시기로 정한 사실상 또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후 토지거래 허가를 받거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등의 사유로 그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는 그때부터 30일 이내에 하면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두16695 판결 참조). 아직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납세자에게 해당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조세행정관계의 법적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또한 원고와 같이 잔금을 지급하고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다가 5년이 경과한 시점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거나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위와 같은 해석이 납세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해석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 6. 27. 선고 98두3174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229 판결)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장차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이 행해진 경우 취득세 부과에 있어서 해당 토지의 '취득시점'에 관한 판단일 뿐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인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위와 같은 해석과 배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2005. 3.경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매매계약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14

체결한 후 2006. 9. 14.부터 2008. 7. 17.까지 잔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2009. 1. 30.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위 잔금지급일이 아니라 위 해제일인 2009. 1. 30.부터 30일이 되는 2009. 3. 1.(공휴일) 다음날인 2010. 3. 2. 만료된다고 할 것이고, 그 만료일 다음날인 2009. 3. 3.부터 이 사건 토지들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기산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기산일인 2009. 3. 3.부터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인 5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민석

판사 이광헌

판사 조 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14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단서 생략)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1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0조의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끝.